

의안번호	2208062
의 퇴 인	김교홍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9.
추 계 번호	25C0663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4조의6 (급식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(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) 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(제3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시설의 설치·운영을 신고한 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의6 (급식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급식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, 해당 시설의 설치·운영을 신고한 자에게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급식시설의 수 및 규모, 급식제공자에게 지원할 예산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, 노인·장애인·소규모어린이 급식시설에 급식 안전관리 지원을 수행 중
 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·장애인 급식시설은 총 13,026개
 -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,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경로당에 대한 급식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있음
 - 2024년 보건복지부의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800억원 (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율 90%, 서울 3,425개소, 지방 65,031개소에 개소당 2,689천원 지원 반영)
 - 경로당 급식지원인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에 방문하여 배식, 식권 검수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(공익활동형), 그 외 행정 등의 지원 업무(사회서비스형)을 수행하는 사업으로, 2024년 4월 현재 6만 4,279명 지원 중
 - 개정안 시행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급식시설의 수와 규모,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금 확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부재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